

2018년도 제1회 전라남도교육청 지방공무원 공개(경력)경쟁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2018년도 제1회 전라남도교육청 지방공무원 공개(경력)경쟁임용시험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2월 20일

전라남도교육청인사위원회위원장

1. 선발예정인원 및 시험과목

시험명	직 군 (계 급)	직 령 (직 류)	선발예정 인 원	선발 구분				필기시험과목 (1,2차 병합실시)
				일반	국가공자	장애인	저소득	
공개 경쟁 임용 시험	행정 (9급)	교육행정	182	167		10	5	제1차: 국어, 영어, 한국사 제2차: 교육학개론, 행정법총론, 사회, 과학, 수학, 행정학개론 중 2과목(선택)
		전산	6	5		1		제1차: 국어, 영어, 한국사 제2차: 컴퓨터일반, 정보보호론
		사서	15	13		2		제1차: 국어, 영어, 한국사 제2차: 사회, 과학, 수학, 행정학개론, 자료조직개론, 정보봉사개론 중 2과목(선택)
	기술 (9급)	공업 (일반기계)	3	3				제1차: 국어, 영어, 한국사 제2차: 기계일반, 기계설계
		공업 (일반전기)	1	1				제1차: 국어, 영어, 한국사 제2차: 전기이론, 전기기기
		시설 (건축)	9	9				제1차: 국어, 영어, 한국사 제2차: 건축계획, 건축구조
		보건	1	1				제1차: 국어, 영어, 한국사 제2차: 공중보건, 보건행정
		식품위생	9	9				제1차: 국어, 영어, 한국사 제2차: 식품위생, 식품화학개론
		조리	29	24	5			제1차: 국어, 한국사 제2차: 위생관계법규
	소계		255	232	5	13	5	

시험명	직 군 (계 급)	직 렬 (직 류)	선발예정 인 원	선발 구분				필기시험과목 (1·2차 병합실시)
				일반	국가유공자	장애인	저소득	
경력경쟁 임용 시험	기술 (9급)	공업 (일반기계)	2	2				제1차: 물리 제2차: 기계일반, 기계설계
		공업 (일반전기)	1	1				제1차: 물리 제2차: 전기이론, 전기기기
		시설 (건축)	5	5				제1차: 물리 제2차: 건축계획, 건축구조
		보건	1	1				제1차: 생물 제2차: 환경보건, 공중보건
		조리	28	28				제1차: 사회 제2차: 위생관계법규
		운전	67	65	2			제1차: 사회 제2차: 자동차구조원리 및 도로교통법규
	소계		104	102	2			
합 계			359	334	7	13	5	

※ 국가유공자, 장애인 및 저소득 구분모집 합격자가 선발예정 인원에 미달되더라도 일반응시자 중에서 추가 선발하지 않습니다.

※ 교육행정직렬 및 사서직렬은 선택과목간 난이도 차이로 인한 점수 편차 해소를 위해 조정점수를 적용합니다.

2. 시험방법

가. 제1·2차 시험은 병합하여 객관식 4지 택1형 필기시험(과목당 20문항)으로 하고, 제3차 시험은 제1·2차 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으로 실시합니다.

나. 필기시험 배점비율은 각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합니다.

구분	공개경쟁임용시험		경력경쟁임용시험	
	교육행정, 전산, 사서, 공업(일반기계), 공업(일반전기), 시설(건축), 보건, 식품위생	조리	공업(일반기계), 공업(일반전기), 시설(건축), 보건	조리, 운전
과목 수	5과목	3과목	3과목	2과목
시험 시간	100분	60분	60분	40분

3. 응시자격

가. 응시결격사유: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며, 「지방공무원법」 제66조(정년)에 해당되지 않아야 하고,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 등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이어야 합니다.

[적용기준일: 최종시험(면접시험)일]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개정된 민법 시행(2013. 7. 1.)에 따라 기존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도 2018년 6월 30일까지는 결격사유에 해당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지방공무원법」 제66조(정년)

① 공무원의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년을 적용할 때 공무원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한다.

▶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①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1.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2.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3.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을 하는 행위

4.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5. 병역, 가점, 영어능력시험의 성적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 5의2. 체력시험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지약물을 복용하거나 금지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6.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 ②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한다.
1. 시험 시작 전에 시험문제를 열람하는 행위
 2. 시험 시작 전이나 시험 종료 후에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
 3. 허용되지 않은 통신기기 또는 전자계산기기를 가지고 있는 행위
 4. 그 밖에 시험의 공정한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시험의 정지 또는 무효 처리기준으로 정하여 공고한 행위
- ③ 이 영에 의하지 않은 공무원의 임용시험 또는 국가공무원의 임용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하여 응시자격이 정지 중에 있는 사람은 그 기간 중 이 영에 따른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 ④ 부정행위를 한 사람이 공무원인 경우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관할 인사위원회에 징계 의결을 요구하거나, 그 소속 기관의 장에게 이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이 통보를 받은 기관의 장은 관할 징계의결기관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 ⑤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처분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이유를 붙여 처분을 받은 사람에게 통지하고 그 명단을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 ⑥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제5호의2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의 취업제한)
-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 ② 비위면직자 등은 당연퇴직, 파면,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

나. 응시연령

시 험 명	응시연령
공개경쟁임용시험 (일반직 9급)	18세 이상 (2000.12.31.이전 출생자)
경력경쟁임용시험 (일반직 9급)	

※ 경력경쟁임용시험의 공업(일반기계), 공업(일반전기), 시설(건축), 보건직에 한하여 2001년 1월 ~ 2월생인 2018학년도 고교 3학년 재학생 응시가능

다. 거주지 제한

- ① 2018년 1월 1일 이전부터 최종시험일(면접시험)까지 계속하여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기간 중 말소 및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한다)가 전라남도로 되어 있거나,
- ② 2018년 1월 1일 이전까지 과거에 전라남도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었던 기간을 모두 합하여 3년 이상인 사람(등록기준지로는 응시할 수 없음)

※ 재외국민(해외영주권자)의 경우 위 요건과 같고 주민등록 또는 국내거소신고 사실 증명으로 거주한 사실을 증명함

- 행정구역의 통·폐합 등으로 주민등록상 시·도의 변경이 있는 경우 현재 행정 구역을 기준으로 하며, 과거 거주 사실의 합산은 연속하지 않더라도 총 거주한 기간을 월(月) 단위로 계산하여 36개월 이상이면 충족함
- 거주지 요건의 확인은 “개인별 주민등록표” 를 기준으로 함

라. 학력·성별 제한은 없습니다.

※ 예외직렬

- 경력경쟁임용시험의 공업(일반기계), 공업(일반전기), 시설(건축), 보건직에 응시하는 사람은 「전라남도교육청 특성화고 및 마이스터고 졸업(예정)자 지방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전라남도 소재 특성화고 기계관련학과, 전기관련학과, 건축관련학과, 보건관련학과 졸업(예정)자 중 대학에 진학하지 않은 자로서 해당 학교장의 추천이 있어야 함.

마. 응시에 필요한 경력 및 자격 요건

- 1) 공개경쟁임용시험의 경력 제한은 없습니다.
- 2) 경력경쟁임용시험의 조리직렬에 응시하는 사람은 조리사 면허 취득 후 「식품위생법」에 의한 집단급식소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합니다.
- 3) 경력경쟁임용시험의 운전직렬에 응시하는 사람은 1종 대형 운전면허 취득 후 당해 시험 공고일 이전 대형버스 운전경력이 1년 이상이어야 하며, 최근 3년 이내(공고일 기준) 음주운전 등의 사유로 면허정지 이상의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구분	직렬	자격요건
경력경쟁 임용시험	조리	▶조리사 면허 취득 후 「식품위생법」에 의한 집단급식소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
	운전	▶1종 대형 운전면허 취득 후 당해시험 공고일 이전 대형버스 운전경력이 1년 이상 ※대형버스의 규격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의 대형 승합자동차(승차정원 36인 이상이거나, 길이·너비·높이 모두가 소형을 초과하여 길이가 9미터 이상)로 함 ※군(軍) 복무기간 중 대형버스 운전경력은 포함하되, 이 경우 군운전경력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며,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는 제출 생략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운전경력증명서”에 음주운전 등으로 면허정지 이상의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함

4) 전산직렬, 사서직렬, 조리직렬, 운전직렬에 응시하는 사람은 다음 자격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면접시험일 현재 아래 자격증 중 유효한 자격증 1개 이상을 소지하여야 합니다.)

구분	직렬	자격증	
공개경쟁 임용시험	전산	등급	종목(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기술사	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통신, 정보관리
		기사	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정보보안
		산업기사	전자계산기제어, 정보통신, 사무자동화, 정보처리, 정보보안
		기타	멀티미디어콘텐츠제작전문가
	사서	등급	1급 정사서, 2급 정사서, 준사서
경력경쟁 임용시험	조리	등급	종목(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기능장	조리기능장
		산업기사	조리산업기사(한식, 중식, 일식, 양식, 복어)
		기능사	조리기능사(한식, 중식, 일식, 양식, 복어)
		경력경쟁 임용시험	조리
기능장	조리기능장		
산업기사	조리산업기사(한식, 중식, 일식, 양식, 복어)		
기능사	조리기능사(한식, 중식, 일식, 양식, 복어)		
운전	등급		

※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임용시험 응시대상 자격증으로 인정함

- **경력경쟁임용시험의 조리직렬과 운전직렬** 응시대상자는 아래 해당 직렬별 제출서류를 접수기간[2018.3.26.(월)~2018.3.30.(금) 18:00]에 등기우편(2018.3.30. 우체국 소인분까지 유효)으로 제출하거나 방문 접수하셔야 하며, 서류전형 결과 불합격자는 필기시험 응시자격이 없습니다.
- ※ 서류전형 결과 불합격자는 원서접수취소 및 응시수수료 반환이 불가하니, 원서 접수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응시대상자는 “응시대상자 제출서류”와 별도로 접수기간에 인터넷으로 응시원서를 접수하여야 합니다.

《 9급 조리직렬(경력경쟁임용시험) 응시대상자 제출서류 》

- ① 주민등록표 초본 1부 (병역사항 포함, 이전주소 포함된 공고일 이후 발행분)
- ② 조리기능장, 조리산업기사, 조리기능사 자격증 사본 1부
- ③ 조리사 면허증 사본 1부
- ④ 경력증명서 1부
(「서식 1」 사용, 사업자등록업체 발행한 2년 이상 조리사 경력)
- 경력기간 : 시험시행 공고일 이전 경력
- ⑤ 집단급식소 설치 신고증 사본(위탁의 경우는 위탁급식업 신고증 사본도 포함) 1부
- ⑥ 근무사실확인서 1부(「서식 2」 사용, ‘④ 경력증명서’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제출)
- ‘위탁급식업체’ 등 근무로 경력증명서상의 소속회사명과 근무지가 다른 경우에 제출함
- ⑦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http://www.nhis.or.kr>에서 발급 가능)

※ 제출처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어진누리길 10 (우편번호 58564)
전라남도교육청 총무과 인사팀 채용담당자 앞
<봉투 겉면에 “지방공무원 조리직렬(경력경쟁) 채용서류 재증” 반드시 표기>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18. 4. 16.(월) 전라남도교육청 홈페이지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추후 필기시험 합격자 제출서류 :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별도 안내

《 9급 운전직렬(경력경쟁임용시험) 응시대상자 제출서류 》

- ① 주민등록표 초본 1부 (병역사항 포함, 이전주소 포함된 공고일 이후 발행분)
- ② 1종 대형 운전면허 사본 1부.
- ③ 경력증명서 1부
(「서식 3」 사용, 사업자등록업체 발행 1년 이상 운전경력)
- 경력기간 : 시험시행 공고일 이전 경력
- ④ 근무사실확인서 1부 (「서식 4」 사용, '③ 경력증명서'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제출)
- '위탁업체'의 근무로 경력증명서상의 소속회사명과 근무지가 다른 경우에 제출함
- ⑤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http://www.nhis.or.kr>에서 발급 가능)
- ⑥ 운전경력증명서 1부
- 최근 3년간(시험시행 공고일 기준) 운전경력이 기록된 증명서 발급
(경찰서 또는 정부민원포털 민원 24 홈페이지 <http://www.minwon.go.kr>에서 발급 가능)
※ 시험시행 공고일 기준 최근 3년의 운전경력이 모두 표시 될 수 있도록 발급하여야 함
예시) 2018.2.28. 발급 받을 경우 3년으로 설정하여 발급하면 공고일 기준 3년보다 적은
기간(2015.2.19.~2015.2.27. 기간 누락)이 증명되므로 충분한 기간을 설정하여
확인 필요한 기간이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
- ⑦ 군운전경력확인서 1부 (해당자에 한함)

※ 제출처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어진누리길 10 (우편번호 58564)
전라남도교육청 총무과 인사팀 채용담당자 앞
<봉투 겉면에 “지방공무원 운전직렬(경력경쟁) 채용서류 재증” 반드시 표기>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18. 4. 16.(월) 전라남도교육청 홈페이지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추후 필기시험 합격자 제출서류 :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별도 안내

5) 경력경쟁임용시험의 공업(일반기계), 공업(일반전기), 시설(건축), 보건직렬 응시
자격 요건

- [전라남도 소재 특성화 및 마이스터고등학교의 아래 해당\(관련\)학과 졸업자 \(2019년 2월 졸업예정자 포함\) 중](#) 고등학교 전학년 내신 평균성적이 상위 30 퍼센트 이내인 자 또는 전문교과 내신 평균성적이 상위 30퍼센트 이내인 자 또는 전남기능경기대회 금메달 입상자 또는 전국기능경기대회 입상자로서 해당 [학교장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시험명	직렬(직류) 임용예정계급	해당(관련) 학과
경력 경쟁 임용 시험	공업(일반기계) 9급	기계과, 자동차과, 기계자동차과, 산업기계과, 자동화기계과, 조선기계과, 공정설비과, 조선설비과, 자동화시스템과, 산업플랜트과, 디지털금형과, 조선디자인과
	공업(일반전기) 9급	전기과, 전자과, 전기전자제어과, 디지털전자과, 광전자과, 공정계전과, 전자기기과, 정보통신과, 전자계산기와, 의료전자과, 물류장비기술과
	시설(건축) 9급	건축과, 건설디자인과
	보건 9급	보건간호과

※ 경력경쟁임용시험의 공업(일반기계), 공업(일반전기), 시설(건축), 보건직렬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반드시 이 공고문에 첨부한 “**전라남도 소재 특성화고·마이스터고등학교 졸업(예정)자 기술직공무원 경력경쟁임용시험 시행계획**”의 임용예정직렬 전공학과 대비표 및 계획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경력경쟁임용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대학교 재학 등 학업의 계속 사유로 임용유예를 할 수 없음)

바. 국가유공자(보훈청 추천) 구분 모집 응시대상자(조리·운전직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와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보훈(지)청에서 추천하는 취업지원대상자만 응시할 수 있습니다.

- 1) 응시 희망자는 **2018. 3. 16.(금)까지 해당 보훈(지)청으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 2) **추천과는 별도로 당해 시험의 원서접수기간(2018. 3. 26. ~ 2018. 3. 30.) 내에 인터넷으로 응시원서를 접수**하여야 합니다.
- 3) 보훈청 추천 관련 절차 및 신청방법 등은 전남서부보훈지청(☎061-270-6816)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4) 국가유공자(보훈청 추천) 구분 모집 응시대상자는 보훈청 추천 구분 모집과 관계 없이 일반적으로 응시할 수도 있으므로, 접수 시 응시원서 해당란에 정확하게 표시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합니다. **【단, 중복접수 불가】**

사. 장애인 구분 모집 응시대상자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 1) 장애인 구분 모집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 현재(2018.3.30.)”

까지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어 있거나,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유효하게 등록·결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 장애인 응시자는 응시원서 접수 후(장애인 응시자 편의지원 계획) 본인의 장애유형에 맞는 편의조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지정기한 내에 장애인증명서 사본과 「의료법」 제3조에 의한 종합병원에서 발급한 의사소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2) 장애인 구분 모집 응시대상자의 증빙서류(장애인 복지카드 또는 장애인 등록증, 국가유공자증)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장애인은 장애인 구분 모집과 관계없이 일반적으로 응시할 수도 있으므로, 접수 시 응시원서 해당란에 정확하게 표시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합니다. **【단, 중복접수 불가】**

아. 저소득 구분 모집 응시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 지원법」상 보호대상자로서, 해당하는 기간(이 기간의 시작은 급여 또는 보호를 신청한 날)이 응시원서 접수마감일까지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사람이어야 합니다.

1) 응시자가 군복무(현역, 대체복무) 또는 교환학생으로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 이로 인하여 그 기간에 급여(보호)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도 가구주가 그 기간에 계속하여 수급자(보호대상자)로 있었다면 응시자도 수급자(보호대상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봅니다.[다만, 군복무 또는 교환학생으로 해외에 체류한 기간 종료 후 다시 수급자(보호대상자)로 결정되어야 기간의 연속성을 인정하며, 이 경우 급여(보호)의 신청을 기간 종료 후 2개월 내에 하거나, 급여(보호)의 결정이 기간 종료 후 2개월 내여야 함]

※ 군복무 또는 교환학생으로 해외에 체류한 전·후 기간에 1인 가구 수급자(보호대상자)였다면 군복무 또는 교환학생으로 해외에 체류한 기간 동안 수급자 또는 보호대상자 자격을 계속 유지하고 있었다고 봅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군복무 또는 교환학생으로 해외에 체류하는 기간 종료 후 다시 수급자(보호대상자)로 결정되어야 기간의 연속성을 인정하며, 이 경우 급여(보호)의 신청을 기간 종료 후 2개월 내에 하거나, 급여(보호)의 결정이 기간 종료 후 2개월 내여야 함]

※ 교환학생의 경우는 소속 학교에서 교환학생으로서 해외에 체류한 기간(교환학생 시작시점 및 종료시점)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함

- 2) 저소득 구분모집 응시대상자는 주민등록상의 거주지 관할 사·군구청장이 발급한 수급자증명서(수급기간 명시), 한부모가족증명서(보호기간 명시) 등 증빙서류를 필기 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3) 저소득 구분 모집 응시대상자는 저소득 구분 모집과 관계없이 일반적으로 응시할 수도 있으므로, 접수 시 응시원서 해당란에 정확하게 표시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합니다.

【단, 중복접수 불가】

4. 문제출제

시험문제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일부 위탁 출제하며, 위탁되지 않는 시험과목에 대하여는 17개 시·도교육청 공동출제로 시행함

구 분	출제기관	과목수	대 상 과 목	공개 여부	문제책 회수
위탁출제	한국교육과정평가원	13	국어, 영어, 한국사, 교육학개론, 행정법총론, 사회, 과학, 수학, 행정학개론, 컴퓨터일반, 정보보호론, 물리, 생물	공개	미회수
공동출제	17개 시·도교육청	15	자료조직개론, 정보봉사개론, 기계일반, 기계설계, 전기이론, 전기기기, 건축계획, 건축구조, 공중보건, 보건행정, 식품위생, 식품화학개론, 위생관계법규, 환경보건, 자동차구조원리 및 도로교통법규	비공개	회수

※ [사회] 과목은 법과 정치, 경제, 사회·문화 / [과학] 과목은 물리 I, 화학 I, 생명과학 I, 지구과학 I / [수학] 과목은 수학 I, 수학 II, 확률과 통계, 미적분 I 에서 출제됩니다.

5. 시험시행 일정

구 분	시험장소 공고	시험일자	합격자발표
필기시험	2018. 5. 1.(화)	2018. 5. 19.(토)	2018. 6. 15.(금)
면접시험	2018. 6. 15.(금)	2018. 6. 27.(수)	2018. 7. 4.(수)
※ 경력경쟁임용시험 중 조리직렬, 운전직렬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2018. 4. 16.(월)

※ 시험장소와 합격자 발표는 전라남도교육청 홈페이지(<http://www.jne.go.kr>)
“정부 3.0 > 시험정보”에 공고합니다.

※ 필기시험 불합격자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7일간, 필기시험 합격자는 최종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7일간 인터넷원서접수사이트에서 안내하며, 본인의 성적에 한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6. 응시원서 접수(인터넷 접수만 가능)

가. 원서접수 기간 : **2018. 3. 26.(월) 09:00 ~ 2018. 3. 30.(금) 18:00까지**

나. 원서접수 취소기간 : 2018. 3. 26.(월) 09:00 ~ 2018. 4. 2.(월) 18:00까지

다. 인터넷 원서접수

1) 접수사이트 : (<http://edurecruit.jne.go.kr>) 《교직원온라인채용》 지방공무원채용

※ 구체적인 방법은 접수기간 중에 원서접수사이트에서 처리단계별로 상세하게 안내하며,
접수마감일 마감시점에 원서접수 시 지원자 폭주 및 인터넷 웹브라우저 오류 기타
사유 등으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여유있게 미리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응시수수료(9급 5,000원)는 신용카드 결제나 계좌이체 결제방법으로 납부하여야
접수처리 됩니다. **【휴대폰 결제불가】**

(본인 이외 타인 카드도 가능하나, 가상계좌를 통한 이체는 불가능함. 또한, 체크카드 결제 시
계좌 잔액 부족 등으로 인한 결제 실패로 접수되지 않을 수 있으니 정상 결제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저소득층(「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
대상자) 응시자는 응시수수료를 면제(원서 접수 마감 후 확인 절차를 거쳐 응시료 환불)

3) 사진파일 : JPG형식, 규격 3.5cm × 4.5cm(파일용량 9Kbyte~100Kbyte)

※ 사진은 스캔한 JPG형식의 파일을 사용하고 최근 3개월 이내 컬러사진이어야 하며
배경이 있는 사진 또는 스냅사진, 모자나 선글라스 등을 착용한 사진, 파일이 너무
크거나 작아서 본인식별이 곤란할 경우 원서접수를 무효 처리합니다.

4) 접수기간 동안에는 취소 또는 기재사항 수정이 가능하나, 접수기간 종료 후에는
기재사항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접수 취소 시 전액 환불이 가능하며, 계좌이체할
경우 당일만 전액 환불되고, 이후는 수수료를 공제하고 환불해드립니다.

5) 응시표는 **2018. 5. 1.(화) 10:00 ~ 면접일까지** 출력이 가능합니다.

※ 접수증은 접수완료 즉시 출력가능하며, 응시표와는 다르므로, 응시표 출력기간
(2018. 5. 1. 부터)에 응시표를 반드시 출력하여 응시번호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6) 접수 시 응시자가 처리단계별 절차에 의하여 입력한 후 최종확인(응시수수료 결제 완료 후 응시료 납부 취소 버튼이 생성되고 원서출력 시 접수번호가 기재된 것으로 정상처리 되었음을 확인)을 하여야 하며, 접수 부주의로 인하여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을 경우에는 응시자에게 모든 책임이 있습니다.
- 7) 선발직렬 및 구분별로 중복하여 원서를 접수할 수 없으며, 중복 접수로 인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습니다.
- 8) PC환경 : 운영체제 윈도우 7~10, 익스플로러 버전 7~11을 지원하고 있으나, 사용자 PC환경에 따라 다르게 표현되거나 일부기능이 제한될 수 있으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7. 양성평등채용목표제

- 가. 대상시험 : 선발예정인원이 5명 이상인 공개경쟁임용시험
- 나. 채용목표 : 시험실시단계별 합격예정 인원의 30%(인원수 계산 시 선발예정 인원 5명 이상 10명 미만일 경우 소수점 이하는 적용하지 않으며, 10명 이상인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를 반올림함)
- 다. 실시방법 : 어느 한 성(性)의 합격자가 채용 목표비율에 미달할 경우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하고, 전과목 평균득점이 합격선 -3점 이상인 해당 성(性)의 응시자 중에서 성적순에 의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목표 미달 인원만큼 당초의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추가 합격 처리함
 - ※ 채용 목표인원에 미달하는 인원만큼 해당 성(性)의 응시자를 추가 합격시키는 것이므로 합격선에 든 다른 성(性)의 합격자가 탈락되는 것은 아님

8. 시험에 있어서의 가산특전

- 가. 취업지원대상자 및 의사상자 등(필기시험 시행일 전일까지 지정된 경우에 한함)

구 분	가산비율	비고
취업지원대상자	과목별 만점의 10% 또는 5%	· 취업지원대상자 가점과 의사상자 등 가점은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 적용
의사상자 등 (의사자 유족, 의상자 본인 및 가족)	과목별 만점의 5% 또는 3%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 대상자,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그 가족은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사람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10% 또는 5%)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 취업지원대상자 가산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선발예정인원이 4명 이상인 모집단위에만 가점 반영됨)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의사자의 배우자 또는 자녀 및 제2조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같은 법 제13조에 따라 취업보호의 대상이 되는 의상자와 배우자 또는 자녀가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사람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5% 또는 3%)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 의사상자 등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선발예정인원의 1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선발예정인원이 10명 이상인 모집단위에만 가점 반영됨)
- ※ 취업지원대상자 여부와 가산비율은 국가보훈처 및 지방보훈지청(보훈상담센터 1577-0606)에, 의사상자 등 여부와 가산비율은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자원과 (044-202-3258) 또는 주민등록지 관할 사군구청 사회복지 담당부서로 응시자 본인이 사전에 확인하여야 합니다.
- 보훈청 추천 구분모집 응시자는 취업지원대상자 가산 특전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나. 자격증 소지자(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유효한 자격증에 한함)

● **공통적용 가산점**(※ 전산 직렬 제외)

다음 표에 제시된 자격증(통신·정보처리 및 사무관리)을 소지한 응시자에게는 매과목 4할 이상 득점자에 대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다음 표에서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직무 분야	채용 계급	자격증 등급별 가산비율			
		자격증	비율	가산비율	
통신 · 정보 처리	9급	정보관리기술사,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정보보안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정보보안산업기사	1%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	0.5%
		컴퓨터활용능력 1급	1%	워드프로세서[2012.1.1 이전 취득은 1급만 인정(2,3급제외)], 컴퓨터활용능력 2급	0.5%

※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가산대상 자격으로 인정하며, 2개 이상 자격증을 소지한 경우 본인에게 유리한 하나의 자격증만 가산함.

● **직렬(직류)별 적용되는 가산점**

다음 표에 제시된 자격증을 소지한 응시자에게는 매과목 4할 이상 득점자에 대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다음 표에서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직렬(직류) 직급	자격증		가산 비율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증	기타 법령에 의한 자격증	
교육행정 9급	-	변호사	5%
공업(일반기계) 9급	기술사: 기계,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차량, 건설기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설비, 기계안전, 공장관리, 품질관리, 소방 기능장: 기계가공, 에너지관리,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정비, 용접, 금형제작, 판금제관, 배관 기사: 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기계설계,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농업기계, 에너지관리,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소방설비(기계분야)		5%

직렬(직류) 직급	자격증		가산 비율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증	기타 법령에 의한 자격증	
공업(일반기계) 9급	산업기사: 컴퓨터응용가공, 기계가공조립, 생산자동화, 기계설계, 공조냉동기계, 에너지관리, 철도차량, 철도차량정비, 철도운송,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기계정비, 판금제관, 농업기계, 배관, 산업안전, 품질경영, 영사, 승강기, 소방설비(기계)		5%
	기능사: 컴퓨터응용선반, 연삭, 컴퓨터응용밀링, 기계가공조립, 생산자동화, 전산응용기계제도, 공유압, 공조냉동기계, 에너지관리,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자동차차체수리, 건설기계정비, 양화장치 운전, 궤도장비정비, 정밀측정, 용접, 특수용접, 금형, 기계정비, 농기계정비, 농기계운전, 배관, 동력기계정비, 영사, 승강기		3%
공업(일반전기) 9급	기술사: 발송배전, 건축전기설비, 전기응용, 철도전기신호, 전기안전, 품질관리, 소방		5%
	기능장: 전기		
	기사: 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안전, 승강기, 품질경영, 소방설비(전기분야)		
	산업기사: 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소방설비(전기분야)		
	기능사: 전기, 철도전기신호, 승강기		3%
시설(건축) 9급	기술사: 건축전기설비,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건설안전, 소방	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 건축사	5%
	기능장: 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기사: 건축설비, 건축,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산업기사: 건축설비, 건축일반시공, 건축, 건축목공, 방수,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기능사: 전산응용건축제도, 타일, 미장, 조적, 온수온돌, 유리시공, 비계, 건축목공, 거푸집, 금속재창호, 건축도장, 철근, 방수, 실내건축, 플라스틱창호		3%
보건 9급	기술사: 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방사선관리, 광해방지, 인간공학	기사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수의사, 약사, 한약사 방사성동위원소 취급자(특수, 일반), 방사선 취급감독자, 응급구조사 1급, 보건교육사 1급	5%
	기사: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광해방지, 인간공학		
	산업기사: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임상심리사1급, 임상심리사2급		

직렬(직류) 직급	자격증		가산 비율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증	기타 법령에 의한 자격증	
		<u>산업기사 자격증</u> 가산비율 적용: 임상병리사, 의무기록사, 방사선사, 간호사, 조산사, 물리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작업치료사, 위생사, 영양사, 응급구조사2급, 보건교육사2급	
	기 능 사 : 식품가공	<u>기능사 자격증</u> 가산비율 적용: 보건교육사3급	3%
식품위생 9급	기 술 사 : 축산, 수산제조, 품질관리, 포장, 식품 기 사 : 축산, 수산제조, 품질경영, 포장, 식품 산업기사 : 축산, 품질경영, 포장, 식품	<u>산업기사 자격증</u> 가산비율 적용: 영양사, 위생사	5%
	기 능 사 : 축산, 식육처리, 식품가공		3%

※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가산대상 자격으로 인정하며, 2개 이상 자격증을 소지한 경우 본인에게 유리한 하나의 자격증만 가산함.

다. 참고사항

- 1) 가산특전 대상자의 증빙서류[취업보호(지원)대상자, 의사상자 등, 자격증 사본]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자는 [응시원서접수사이트](#)에 [자격증의 종류\(가산비율\)](#) 및 [자격번호](#)를 입력하여야 합니다. (OMR 답안지에는 가산점 표기란 없음)
- 2) 응시자의 부주의로 [자격증 종류\(가산비율\)](#) 및 [번호\(보훈번호\)](#)를 잘못 입력하여 생기는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귀책사유임을 알려드립니다.
- 3) 필기시험 시 허위로 가산점을 표기한 자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에 의거 합격의 취소 및 향후 5년간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 4) 자격증 가산점수는 공통적용 가산자격증 1개, 직렬별 가산자격증 1개씩 인정 (최대 2개 인정)
- 5) 위의 가, 나항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가산점수를 합산합니다.
- 6) 위의 “가”항과 “나”항의 “[매 과목 4할이상](#)”이란 응시자의 [조정점수와 조정 전 점수](#) 중 어느 하나가 4할 이상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 7) 득점한 과목 중 한 과목 이상의 점수가 만점의 4할 미만인 자는 위의 가, 나항의 가산점수를 가산하지 않습니다.

9. 합격자 결정

가. 필기시험

- 1) 공개경쟁임용시험 필기시험에서 과락(각 과목 만점의 40% 미만)이 있을 경우 불합격 처리되고, 경력경쟁임용시험 필기시험에서 과락(각 과목 만점의 40% 미만)이 있거나 총점의 60% 미만 득점할 경우 불합격 처리되며, 그 밖의 합격자 결정방법 등 시험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등 관계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을 경우(소수점 둘째자리까지 계산) 전원 합격자로 결정합니다.

나. 면접시험

- 1) 우수: 면접위원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모두를 “상”으로 평정한 경우
- 2) 미흡: 면접위원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면접위원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를 “하”로 평정한 경우
- 3) 보통: “우수”와 “미흡” 외의 경우

다. 최종합격자

- 1) 면접시험에서 “우수” 등급을 받은 응시자는 합격으로 합니다.
다만, “우수” 등급을 받은 응시자의 수가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 성적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선발예정인원에 달할 때까지 합격으로 합니다.
- 2) 면접시험에서 “보통” 등급을 받은 응시자는 필기시험 성적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우수” 등급을 받은 응시자 수를 포함하여 선발예정인원에 달할 때까지 합격으로 합니다.
- 3) 면접시험에서 “미흡” 등급을 받은 응시자는 불합격으로 합니다.

※ 그 밖에 합격자 결정방법 등 시험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등 관련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0. 최종합격자의 등록 및 처우

- 가. 최종합격자는 지정한 기일 내에 전라남도교육청 총무과에 신규임용후보자 등록을 필하여야 합니다.
- 나. 신규임용후보자 등록을 필한 자는 전라남도교육청 산하기관에 임용합니다.
- 다. 전보 및 전직 제한
 - ※ 공개경쟁임용시험 응시직렬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제4항에 의거 3년 이내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이 제한됩니다.
 - ※ 경력경쟁임용시험 응시직렬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제3항에 의거 3년간 다른 직위에 전보할 수 없으며, 4년 이내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할 수 없고, 동령 제28조 제3항에 의하여 3년간 전직이 제한됩니다.

11. 응시자 유의사항

- 가.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면밀히 검토한 후 응시원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나. 응시원서의 기재착오 및 누락, 연락불능 등으로 초래되는 불이익은 모두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다.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사항이 다르거나 시험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자는 당해 시험을 무효로 하고 관련법령에 따라 처벌됩니다.
- 라. 응시자는 시험당일 시험시작 40분전까지 응시표와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컴퓨터용 흑색 수성사인펜을 지참하고 지정된 좌석에 앉아 시험감독관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시험지 배부시에는 시험장 입실 불가)
- 마. 시험에 있어 부정행위를 하거나 연명, 거주지, 가산점, 자격증 등 시험에 관한 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시험을 무효로 하고 향후 5년간 그 응시자격이 정지됩니다.
- 바. 응시자는 시험시간 중에 일체의 **통신장비(휴대폰, PDA, MP3, 무선호출기, 이어폰, 스마트워치 등)**와 **전자기기(전자수첩, 전자계산기 등)** 및 수정액, 수정테이프 등을 사용할 수 없으며, 발견된 경우에는 부정행위자로 간주 처리합니다. 다만 지참할 경우에는 시험실 전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 시험실에는 시계가 비치되어 있지 않음.(계산 기능 등이 있는 다기능시계, 문자 송·수신 기능이 있는 스마트 시계 등은 소지 불가하며, 아날로그 시계만 가능함.)
- 사. 기타 보조기구(귀마개, 모자 등)는 착용이 불가합니다.
- 아. 응시표는 원서접수 마감 후 2018. 5. 1.(화)부터 면접시험일까지는 원서접수사이트에서 출력이 가능합니다. 단, 시험당일 분실하였을 경우에는 시험시작 1시간 전까지 고사관리 본부에서 재교부 합니다.
- 자. 답안지 기재는 컴퓨터용 흑색 수성사인펜만 사용하여야 하며 일반펜 사용 및 작성상의 오기로 인한 불이익은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 차. 응시자는 응시표, 답안지, 공고문 등에서 정한 주의사항에 유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본인의 불이익이 됩니다.
- 카. 시험 중에는 화장실을 사용할 수 없으며, 시험시간이 종료되기 전 답안기재가 끝났거나 시험을 중도에 포기하더라도 시험시간 종료 시까지 퇴실하지 못합니다.
- 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라남도교육청 총무과(인사팀)로 문의 바랍니다.
- 전화 : (061) 260-0715
 - 주소 : 우 58564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어진누리길 10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시행 7일전까지 전라남도교육청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jne.go.kr>) “정부 3.0>시험정보” 란에 공고합니다.

